
 ◈ 政府 施策 ◈

輸入先 다변화 품목 개정 고시

— 規制品目 총 230개로 줄어 —

상공자원부가 지난해 31자로 개정 고시,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에 따르면 현재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 對日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258개 품목중 25개 품목을 수입선다변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수입선다변화 품목수는 품목분류 변경으로 다른 규제품목에 통합된 3개를 제외하고 총 230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축소할 것은 신정부 출범 이후 韓·日간의 새로운 관계개선에 적극 부응하고 국제화·개방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도 5년 내에 50%를 줄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지정된 품목중 대외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5년 이상 10년 이내 장기지정된 품목으로 독과점 생산품인 경우, 내수규모가 적어 개방되더라도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신대체품의 개발로 수요가 전환된 품목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에 비해 산업기술협력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등을 위해 필요한 품목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되는 품목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對日 무역역조 개선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지정품목수는 지난 87년 632개에서 88년에 344개, 89년에 262개등으로 축소조정돼 오다가 91년부터는 對日무역역조 개선부진과 전체 무역적자등으로 258개가 계속 유지돼 왔다.

▣ 새로 개정된 수입선 다변화 품목 (전기관련 품목)

H S	품 목 명
6814 10 0000	○판, 스위치 및 테이프의 집성운모 절연제품, 다만, 집성운모박은 제외
8502 12 000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초과 375KVA 이하의 발전세트
13 101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400KW에 상응하는 것 이상 750KVA 이하의 발전세트
20 1000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 이하의 발전세트
8504 40 2010	○무정전 전원장치. (단상 0.5KVA 이상 50KVA 이하 및 삼상 10KVA 이상 750KVA 이하의 것에 한함)
40 2090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삼상 0.5KVA 이상 400KVA 이하의 것에 한함)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 다만, 착암기는 제외
20 0000	○전기톱
80 0000	○기타의 수직식 전동공구. 다만, 대패, 그루버, 정타기는 제외
8536 20 0000	○전압 1,000V 이하의 자동차단기중 다음의 것
	- 배선용 차단기 (Circuit Protector를 포함하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누전차단기 (정격전압 4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1,200A 이하의 것)
	- 기중차단기 (정격전압 660V 이하용으로 정격전류 3,200A 이하의 것)
50 9000	○전자개폐기 (Magnetic Switch) (전자접촉기를 포함하며 사용 전압 600V 이하용의 정격용량 375KW 이하의 것)
8544 11 1000	○절연도료 피복권선용 전선
20 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60 3090	○전압 100KV 초과외 기타전선. 다만, Bus Duct는 제외

■ 국산개발대상품목 및 부품수입추천기관

추천기관	국산개발대상품목	
	H S	품 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36	전자개폐기

'94년도 團體隨契 물품지정 - 지정組合 · 業體늘고 物品수는 줄어 -

상공자원부는 금년에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상물품을 101개 업종별 협동조합이 관장하고 있는 가구류·피복류·통신기기류등 496개로 지정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금년도 단체수의 계약 물품은 지정조합수가 작년보다 200개사가 많은 7300개사, 예상계약액은 2천억원이 많은 2조8천억원에 달하나 지정물품수는 작년의 518개보다 22개가 줄었다.

업종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은 가구류가 74개품목으로 가장 많고 피복류 52개, 기계류 34개, 공예품류 34개, 음식료품류 27개, 금속류 25개, 문구류 22개, 조리기계류 21개, 제빵류 17개, 전기용품류 16개, 통신기기류 16개, 플라스틱제품류 12개, 조명기구류 11개, 침장류 11개, 스포츠용구류 11개, 전선류 9개, 인쇄물류 6개 등이다.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물품의 성격상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인 생산조합원수가 3인이상인 경우등에 한해 지정을 하고 있다.

한편 상공부는 앞으로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을 지정할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수요가 많고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지정하되 단체표준과 KS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획득한 업체에 한해 단체수의계약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품질 및 기술수준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수혜비율을 확대하는등의 경쟁적 요소를 도입,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94年度 團體隨意契約 對象 指定物品 (전기관련 품목)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계약대상 지 역	조 합 명
5925-022	31201109	차단기, 누전	전 국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930-095	31201109	개폐기, 절연자동 (가공설치용의 것으로 SF6 가스개폐기에 한함)	전 국	"
5975-021	28114109	클램프 (전기용에 한함)	전 국	"
6110-011	31203101	배 전 반	전 국	"
6110-014	31201109	분 전 반	전 국	"
6110-022	31109109	전압조정기 (AVR에 한함)	전 국	"
6110-025	31203109	제어반 (계장제어반에 한함)	전 국	"
6110-063	31109109	무정전 전원장치	전 국	"
6110-070	31102101	변압기, 가정용소형 (강압기)	전 국	"
6115-053	31101109	발전기, 디젤엔진 (800KW 이하에 한하며, 해상용 및 방음형은 제외)	전 국	"
6120-001	31102104	리액터 (분로용 제외)	전 국	"
6120-010	31102109	변압기, 접지 (일단접지주상용의 것으로서 22.9KV-Y에 한함)	전 국	"
6120-013	31102109	변압기, 전력배전 (주상용 및 철도용 특별고압 변압기 포함)	전 국	"
6130-027	31109109	충전장치 (충전기)	전 국	"
6130-037	31109109	전력공급장치 (용량 4,000KW 이하의 것으로 철도용 정류장치에 한함)	전 국	"
6130-039	31109102	정류기, 부동용	전 국	"
6140-001	31402101	축전지, 연 (GP2-36, GP6-96, LGR-288, LGR-432제외)	전 국	한국전지공업협동조합
6145-006	31301109	전화선 (비닐절연, 옥외전화선, 옥내전화선, 감심옥외전화선 포함)	전 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계약대상 지 역	조 합 명
6145-015	27231102	연 동 선	전 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6145-019	31301109	케이블, 시내 (PE 절연알미늄 차폐케이블, PE 시내쌍케이블, CCF 시내케이블을 포함하며, 폼스킨 케이블은 제외함)	전 국	·
6145-035	31301109	케이블, 제어	전 국	·
6145-039	31301109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CW)	전 국	·
6145-040	31301109	점파선 (나이론피복 2개 연점파선 PVC 점파선, ESS 점파선 포함)	전 국	·
6145-046	31301109	강심알미늄연선 (ACSR-OC를 포함하며, AW류는 제외)	전 국	·
6145-077	31301109	600V 비닐절연전선 (IV)	전 국	·
6145-078	31301109	케이블(셀프) 써포오팅	전 국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상공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3-105호, '94. 1. 3) 했다.

1. 개정취지

경제 행정규제완화 과제등의 일환으로 현행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전기가 수반되는 자동제어 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조항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기능 수행.

- 수급한도액 산정방법 개선 → 2년미만 공사영업위자의 수급한도액 산정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공사실적이 자본금보다 많을 경우 유리한 쪽으로 적용 가능토록 개정.
 - 전기공사, 설계도의 작성에 있어 건축설비 분야를 건설부문으로 조문정리.
 - 제2종 공사업의 기재사항 변경수리업무를 시·도에서 공사협회로 위탁.
3.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1월 24일까지 상공자원부 장관 (전력운영과 503-96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尖端産業 關稅減免대상 축소

— 財務部, 1089개 품목에서 707개로 줄여 告示 —

관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 품목이 대폭 축소됐다.

財務部는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업종 및 품목 지정고시를 개정,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지난해 1089개에서 새해는 707개로 줄이기로 했다. (재무부령 제 1959호, '93. 12. 31)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가스료 등 382개이며 이들 품목은 오는 2월말까지 수입신고가 이뤄지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오는 3월부터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財務部는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난 91년에 감면율 60%로 출발, 지난해 40%로 시한이 다가 왔으나 오는 97년까지 매년 5%씩 감면율을 낮춘다는 방침아래 적용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면율을 연도별로 보면 금년이 35%, 95년이 30%, 96년 25%, 97년이 20% 등이다. 財務部는 오는 3월께 공정개선·신상품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신규 감면대상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장자동화·환경보전·산업재해방지 등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새해에 아무런 변동없이 작년과 똑같이 적용되나 감면율은 일부 조정된다.

〈관세감면대상 물품〉

▣ 첨단기술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전기관련 85류)

1. 정밀전자 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8504	40	정류기
8514	10, 20, 30	전기로와 오븐
8514	10, 20	결정육성장치
8514	40	가열기
8514	90	보트로다
8515	11, 19	자동납땀기
8515	21, 29	점용접기 또는 봉합용접기
8515	21, 29, 80	전기저항식 용접기
8515	21, 29, 80	특수용접기 (와이어본더를 포함함)
8515	31, 39	아크용접기
8515	80	본딩헤드 (Work Holder를 포함함)
8515	90	레이저 용접기
8517	40	신호변환기
8537	10, 20	배전반 또는 제어반 (조절반을 포함함)

2.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 기계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8514		전기로와 오븐(화학 또는 물리증착장치로를 포함)
8514	10	전기식 소결로
8514	40	가열기
8514	40	특수경화기
8515	21, 29	전기저항식용접기

세 번	부 호	품 명
8515	31, 39	아아크용접기
8515	80	전자빔용접기 (레이저용접기 포함)
8537	10	자동제어반

3. 신소재 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8514	20	전기로와 오븐
8514	10, 20, 30	전기로와 오븐
8514	20	진공소둔로
8537	10	직류모타제어반

4. 광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8514	10	전기가열로
8515	11, 19	자동납땀기

5. 항공기 산업

세 번	부 호	품 명
8515	29	점용접기

▣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전기관련 85류)

세 번	부 호	품 명
8514		열처리기
8514	10, 20, 30, 40	전기로 또는 오븐
8514	20	진공용해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原產地 표시위반 通關不許 －

앞으로 국제입찰은 관련단체나 상공자원부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역업등록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종전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비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제가 대폭 강화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불허와 함께 벌금형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상공자원부가 고시, 1월 5일부터시행기로 한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국제입찰방식에 의해 발주되는 500만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수출을 추진할 경우는 국제입찰 마감 15일전까지 5천만달러 미만은 관련협회나 조합, 그 이상은 상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 국제입찰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승인폐지를 계기로 수주업체가 난립,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국내업체가 최저응찰자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 응찰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국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조정명령 또는 질서문란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계속 취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소액 수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무역업등록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범위를 취소불능일람 불화환신용장방식의 경우 종전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 했다.

전당 2만달러 이하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를 기준, 64.2%(92년 기준, 138만6천 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번에 무역업 등록 면제대상으로 추가된 1~2만달러 수출은 전체수출의 17.3%(37만3800 여건)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공고등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된 물품에 대해 연계무역을 추진할 경우 연계무역추진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했던것도 폐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수출규제완화와 달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요건은 강화, 상표와 상호등이 한글등으로 표시돼 국산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당해물품(또는 포장이나 용기)의 전면이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입후 국내에서 분할 재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이나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원산지 표시에 유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공부는 또 수입후 재포장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거래되는 물품 등은 판매시 당해물품 또는 판매용기 및 판매장소에 스티커, 풋말, 안내판등을 부착 또는 게시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또한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를 제거·은폐·변조해 판매하면 관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다.

대신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전판정 제도도 신설,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수입신고 이전이라도 관세청장에게 문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금까지는 수입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은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지도계몽 위주로 단속활동을 펴왔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불허는 물론 대외무역법 6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42개 품목 輸出 申告制 폐지

- 상공부, 統合公告개정 -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42개 품목(HS 6단위)에 대한 수출신고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전기용품등의 수입요령도 일부 개정, 합성수지제 전선관등 12개 품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하고 작동완구등 5개 품목은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가정용 전동채봉기기등 10개 품목은 형식승인대상에 추가하고 전동식천공기등 32개 품목은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합공고중 개정고시를 8일자로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춰 전기용품의 수입요령도 변경, 합성수지제 전선관과 전기육묘기, 전기가위, 전기화로 등 12개 품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

로 변경했다.

대신 가정용 전동재봉기와 커피분쇄기,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가요반주기, 전기 녹즙기, 교류아크용접기 등 10개 품목은 형식승인대상에 추가했다.

또 전기냉장고와 프린터, 모니터, 전기드릴, TV수상기 등 14개 품목은 형식승인 범위를 조정하고 사무용인쇄기와 전동식 천공기, 전기문서 세단기, 전기칼등 32개 품목은 신고(수입후 30일 이내)대상에 추가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할로겐전구등 5개 품목은 사전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상공부는 UR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금년중 47개 개별법상 수입요건 및 절차가 국제규범에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 개별법에 의한 수입요령을 개선, 보완하고 수입요건 확인절차 간소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이를 통합공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공고 개정관련 전기용품〉

- ▲ 형식승인 추가 품목 : 무정전전원장치, 교류아크용접기
- ▲ 형식승인 범위조정 품목 : 전기드라이버, 전기드릴, 전기톱, 전기샌디, 전기대패, 전기포리셔, 전기그라인더, 기타 전동공구

예산회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등 입법예고

재무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재무부 공고 제 1993-74호, '93. 12. 30) 합니다.

1. 개정취지

정부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 전문감리회사의 감독근거를 신설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산회계법개정(안)이 금명간 확정·시행될 예정인바, 동 개정법률(안)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골자

가.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

1) 제한 및 지명경쟁입찰 대상확대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2) 전문기관(회사)에 감독을 위탁할 수 있는 계약대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기타도급계약

3) 예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함.

4)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94~'95)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 이상을 당해지역 소재업체로 구성토록 함.

○지방중소건설업체에의 기술이전 및 시공경험 습득기회 부여

나.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개정(안)

-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지금까지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총 공사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총공사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그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적격자로 결정함.

다. 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안)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재보다 2배로 연장함.

- 철도, 댐, 철강교 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 및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설공사 : 10년

-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공사 : 8년
- 관개수로·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교정시설 건설공사 : 6년
- 도로·일반건축·부정정리·조경시설물 설치·조경식재등의 공사 : 4년
- 기 타 : 1~3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무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 전화 : 500-53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HSK 分類 일부 개정 - 177개 품목 新設 92개 품목 削除 -

財務部는 관세율표 및 무역서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에 들어갔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HSK개정에 따라 품목분류는 10단위 기준 종전 1만 417개에서 1만 502개로 85개가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품목이 177개이고 기존품목 분류중 92개는 삭제됐는데 분야별로는 공산품이 8987개로 72개가, 농산물은 1515개로 13개가 각각 증가했다.

기계전자(제 84-97류) 분야에서는 신규 유망산업인 센서에 대한 세번이 신설되고 발전기류에 대해서는 현재 용량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것이 축소 통합됐다.

그런데 HS품목분류는 관세협력이사회(CCC)가 제정한 국제협약으로 세계 주요무역국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6단위(5018개 품목)이며 이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 것이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이다.

對日延支給 수입기간 延長 - 수출용 原資材에 한해 60일로 -

日本・臺灣등 인근지역으로부터 수입시 外上거리가 허용되는 기간이 연장된다.

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輸出先受金 영수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財務部는 이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외환관리규정관련 通牒을 시달해 1월 1일자로 소급 시행토록 했다.

延支給(외상) 수입은 관세율이 10% 이하인 품목을 대상으로 60일(내수용) 또는 120일(수출용)까지 인정해 주고 있으나 일본등 항해기간이 10일 이내인 인근지역은 30일로 차등 적용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日本엔貨 강세에 따른 對日수입의존 기업의 자금부담등을 고려해 연지급 수입기간을 수출용 원자재(관세율 10% 이하)에 한해 60일로 연장시키는 한편 내수용(관세율 5% 이하)은 종전 30일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인근지역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에 따라 무역업체가 약 3억달러의 貿易信用도입(외화차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또 선적전에 수출대금의 일부를 미리 영수하는 輸出先受金の 업체별 영수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2%에서 3%로 확대되며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늘어나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10%의 영수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역업체가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할 수 있게될 금액은 2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 연지급 수입제도 현황

물품영수후 또는 선적서류 인수후 일정기간 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

	대 상	기 간
일 반 지 역	관세율 10% 이하	수출용 : 120일 내수용 : 60일
인 근 지 역 (일본·대만등)	수출용 : 관세율 10% 이하 내수용 : 관세율 5% 이하	수출용 : 30일 → 60일 내수용 : 30일

標準検査基準 대폭확대 방침

- 工振廳, 올해 100개 품목 追加 총 291개로 -

공진청은 종전 수출의무검사 제도가 금년부터 업계의 자율검사체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지도 모를 품질불량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출상품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품목별 표준검사기준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은 기존 수출검사법을 대체할 수출품 품질향상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수출규모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191개 품목의 표준검사기준을 제정, 보급한데 이어 금년중에 추가로 약 100개 품목의 표준검사기준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공진청이 제정한 표준검사기준은 수출상대국의 기술장벽 유형을 파악, 수출선별 품질규제 내용과 소비자의 품질요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서 수출대상 지역의 소비생활수준과 가격조건에 따라 품질수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진청은 이같은 표준검사기준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기위해 무역 유관기관 및 상사 해외정보망을 통해 전 수출공산품에 대한 각국의 품질규제 내용을 파악,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표준검사기준을 앞으로 수출업체 및 관련단체에 보급, 수출업체들의 자율적인 품질검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간 시험검사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이나 대외 통상협력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분야별 표준검사기준 제정대상품목

분 야	표준검사 기준명 (HS 10)
전기전자 31 (HS : 158)	변압기 (10), 아답터 (2), 전지 (10), 축전기 (6), TV카메라 (3), 라디오수신용기기 (22), 텔레비전수상기 (9), 위성수신용안테나 (1), 경보기 (3), 축전지 (4), 전기저항기 (4), 백열램프 (6), 이퀄라이저 (1), 전기냉장고 및 냉동고류 (10), 전기제빙기 (2), 전기냉수기 (2), 복사기 (5), 철강제의관련결구류 (10), 레코드플레이어 및 전기축음기 (14), 전화응답기 (1), 녹음기 및 음성기록기 (14),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4), 오디오녹음용테이프 (3), 비디오녹음용테이프 (1), 마그네틱디스크 (2), 워키토키셋트 (2), 확성기 (3), 헤드폰 (1), TV수상기용안테나 (1), 형광방전관 (1), 가청주파증폭기 (1)

‘1社 1革新運動’ 적극전개

— 工振廳, 94년 업무계획 —

공진청은 UR타결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품질혁신을 통한 공산품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공진청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산품 품질제고를 위한 범산업적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시책으로 품질제일주의를 지향하는 품질경영운동을 전산업에 보급하는 한편 품질보증 인증제도(ISO 9000)를 본격적으로 시행, 공산품의 국제 신뢰도 제고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전산업에 1사 1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키로 했다. 또 품질경영추진본부를 현 208개에서 233개로 확대하고 한국형 품질경영기법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 한국인증관리센터 1개에 불과한 국제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80여명의 국제심사원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다.

공진청은 국제환경변화에 대비한 국가표준의 선진화등으로 외국기술장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신기술 및 신제품과 물류·정보등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선진화 5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 ISO의 환경경영표준화(TC 207) 작업에 적극 참여,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고 국가간 또는 시험검사기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진청은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생산현장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내년중 1만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수탁연구제도도 대폭 활성화키로 했다.

공진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수출품 의무검사제도를 자율검사체제로 대체하며 검사제도를 안전검사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각종 인·허가시 품질경영 우수업체에 대한 공장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또 UR 시대에 부응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 물류, 정보등의 새로운 기술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화시대 대비한 지방중소기업 기술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國別·商品別기술장벽 DB化 - 工振廳, 바이어요구 規格 통보요청 -

공진청은 국내 수출업체들이 외국의 각종 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각종 기술장벽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EU(유럽연합)나 NAFTA와 같은 경제블록에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E마크 획득이 요구되고 있다. 또 대만은 시멘트 수입시 BS규격에 의한 국가 검사합격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는 페인트 수입시 SGS 검사합격을 요구한다. 미국 바이어들은 스테인리스 기물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피막 3중부착 강도에 대한 열충격시험 합격을 요구하기도 한다.

공진청은 바로 이러한 기술장벽 내용들을 국별 상품별로 종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는 수출업체들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금년중 해외공관등 정부정보망과 무역협회·무역진흥공사등 유관기관 및 종합상사 해외정보망, 국내 수출검사기관 및 수출업체등의 국내정보망을 통해 수출지역별 상품별로 각종 규제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계획으로 있다.

공진청은 최근 미국·EU·일본등 선진 각국들이 기술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기술장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진청은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수출업체들이 수출상담이나 해외마케팅시 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이 있으면 공진청 기준조정과 (전화 : 503-7935)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출通關節次 간소화 - 關稅廳, 규정개정 ... 製造前 輸出申告 가능 -

올해부터 수출물품 제조완료 예정일 5일전부터 수출신고하고 세관장의 별도 허가 없이 수출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타소장치허가제도가 폐지되고 검사장소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관세청은 행정규제 완화 및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통관 세부시행규정인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수출통관시 보세구역이나 세관장허가를 받아야만 타소장치할 수 있던 것을 고쳐 제조공장등 수출자가 편리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타소장치허가제 및 허가수수료(건당 4500원)는 없었다.

또 종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어도 제조·가공을 완료하고 장치장소에 장치한 뒤에야 수출신고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수출물품 제조완료 예정일 5일전부터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제조전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물품은 미리 서류심사를 실시, 검사생략물품인 경우 제조완료일에 수출면허해 주고 검사물품인 경우 물품검사를 한 뒤 수출면허를 해주게 된다.

또한 세관검사를 위해 수출물품을 일부러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으로 옮기지 않고 편리한 장소에서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위해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으로 옮기거나 다른 장소에서 세관검사장으로 옮기거나 다른 장소에서 세관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올해부터 세관장의 허가제도 자체를 없앴다.

한편 관세청은 제조전 수출신고 허용으로 서류작성 및 심사소요시간 1~2일 단축 효과외에 타소장치허가수수료 폐지에 따른 약 37억원의 비용절감과 검사를 위한 운송·하역비등 수출업체의 상당한 비용절감과 적기선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還給신청절차 改善

- 관세청, 제조자도 위임없이 환급가능 -

올해부터 수출품제조자도 환급권 위임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수출확인방법도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수출업체가 많은 부대비용과 환급지연으로 불편했던 환급신청 위임장 제도 및 수출물품의 船積(수출) 확인 절차를 대폭 완화토록 환급특례법 시행세칙을 고쳐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 제조자가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인으로 지정해 수출면허를 받으면 수출자의 환급권 위임없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출품 제조자가 환급신청을 할 때 환급권 양수확인을 위해 수출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환급신청위임장등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따른 불편과 환급지연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환급시 船·機積(수출)사실 확인서류로 선장수령증(M/R)과 수출대금 결제가 확인된 수출면장등만 인정했으나 금년부터는 선하증권(BL) 사본이나 운송주선업자 화물수령증(FCR)으로도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MR 교부등을 위한 선적지항구 출장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선박회사(MR)나 외국 환은행(대금결제)의 확인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업계의 수출확인방법 개선요구를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관세환급시 인정되는 선거적확인서류는 종전 선장수령증, 수출대금결제가 확인된 수출면장외에 선하증권 사본(AIRWAY BILL 포함), 운송주선업자 화물수령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완제품공급자나 수출위탁자등 수출물품제조자가 수출신고서 환급신청인으로 지정하면 수출면장 진별로 일일이 환급신청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관련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적기 환급으로 자금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업체가 MR, 수출면장, 선하증권사본, FCR 가운데 편한 것을 확인서류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은 물론 환급신청기간도 현재보다 4~5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獨寡占 사업자 140개 品目 332個社

- 18개 品目 56개社 신규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지위를 누리고 있는 94년도 市場支配的事業者로 140개 품목, 총 332개 사업자를 새로이 지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18개 품목, 56개 사업자는 신규지정됐다.

통신선 및 케이블등 18개 품목 59사업자는 금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됐다.

금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은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중점 규제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내역을 보면 신규지정된 18개 품목의 경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품목은 가정용펌프 등 6개 품목이다.

상위 3社の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품목은 전력회로차단기·자동차용내연기관등 1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타사업자사업활동방해 △신규사업자 침입방해등이 중점 규제되며, 대리점계약서·물품 및 공사계약서상의 남용행위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기업결합이나 과점품목의 동조적 가격인상을 엄격히 감시하고, UR협상타결에 따른 내수시장의 국제화에 대응키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점유율기준으로 1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사 업자 이하의 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기준으로는 최근 1년간의 국내 총공급액이 500억원 이상인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정된다.

▣ '94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전기관련 품목)

품 목	사 업 자 명
전력회로 차 단 기 (고압용)	효성중공업 (주) 일진전기공업 (주) 현대중전기 (주)
전력회로 차 단 기 (저압용)	금성계전 (주) 금성기전 (주)